

# 제3호 의안

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

## 2021년도 잉여금 처분(안) 승인

– 2021년도 잉여금 처분(안) 보고

□ 의결주문 : 2021년도 잉여금 처분(안)을 자료와 같이 승인하다.

□ 제의관련조항 : 정관 제29조 5호, 제67조 4항

정관 29조[총회의 의결사항] 5호:대차대조표,수지계산서,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

# 2021년도 잉여금 처분(안)

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

## 2021년도 잉여금 처분(안)

제 1 9 기 2021년 1월 1일부터  
2021년 12월 31일까지  
처 분 확 정 일 2022년 3월 31일

제 1 8 기 2020년 1월 1일부터  
2020년 12월 31일까지  
처 분 확 정 일 2021년 3월 31일

(단위: 원)

과목	제 19 (당) 기		제 18 (당) 기	
	금액		금액	
<b>I. 처분전이익잉여금</b>		<b>94,442,357</b>		<b>214,284,304</b>
1.전기이월이익잉여금	214,284,304		743,311,281	
2. 전기오류수정손실				
2.당기순이익	-119,841,947		-529,026,977	
<b>II.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</b>				
1. 사업확장적립금 이입액				
<b>합 계</b>				
<b>III. 이익잉여금처분액</b>		<b>0</b>		<b>0</b>
1. 법정적립금				
2. 고유목적사업금				
가. 복지환경개선금				
<b>IV. 차기이월이익잉여금</b>		<b>94,442,357</b>		<b>214,284,304</b>

※ 2021년 12월 31일 현재 법정적립금은 200,997,882원으로 출자금 총액 129,340,000원의 3배 (388,020,000)에는 미달하나 당기순손실로 0원을 적립함.

※ 정관 제23조【법정적립금】① 이 조항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.

### ■ 복지환경개선금

항 목	금액	비고
I. 매출액	2,095,123,504	
II. 매출원가	1,390,059,057	
III. 매출총이익	705,064,447	
IV. 판매및일반관리비	1,212,933,741	
V. 영업이익	-507,869,294	
VI. 영업외수익	412,599,458	
VII. 영업외비용	24,572,111	
VIII. 경상이익	-119,841,947	
IX. 복지환경개선금 조성액	84,767,939	
X. 장학금(기지급 )	0	
XI. 복지환경개선금(대학전출)	84,767,939	IX- X
XII. 경상이익(전출금 포함)	-204,609,886	VIII- XI

### ■ 복지환경개선금 조성 기준

구분	기준항목	적립률	매출액/매출이익	조성금액	비고
매점부문	매출액	7%	549,395,371	38,457,676	
카페부문	매출액	15%	31,839,271	4,775,891	경영대
문구부문	매출액	7%	34,775,491	2,434,284	
농산물부문	매출액	7%	-	-	
자판기부문	매출액	7%	38,230,815	2,676,157	
서점부문	매출액	5%	431,090,394	21,554,520	
급식부문	매출액	0%	514,752,278	-	
위탁업무부문	매출이익	50%	2,592,775	1,296,388	매출액 - 매출원가
임대업부문	매출액	50%	27,146,046	13,573,023	
합 계				84,767,939	